



교회 대상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안내서

**A Guide for
Congregations
Considering
Membership with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캐나다 장로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본 교단에 가입하려는 많은 분들을 늘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및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한마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분들은 캐나다 곳곳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도움을 나누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내서는 교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몇가지 방침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문서 자료와 방침에 대한 요약 설명이 본 안내서 말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정체성(Who We Are)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개혁교회로서 우리는, 성경의 진실과 영감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삼위(성부·성자·성령)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다양한 국가적,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온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900 여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아랍어(Arabic), 광둥어(Cantonese), 크리족어(Cree-캐나다원주민언어), 영어(English), 에피크어(Efik-나이지리아의 에피크족 언어), 필리핀어(Filipino), 불어(French), 가어(Ga-가나 언어), 힌두어(Hindi), 헝가리어(Hungarian), 이보어(Ibo-나이지리아언어), 한국어(Korean), 중국표준어(Mandarin), 오지브웨어(Ojibwe), 포르투갈어(Portuguese), 펀자브어(Punjabi), 스페인어(Spanish), 대만어(Taiwanese), 트위어(Twi-가나언어), 우르두어(Urdu-파키스탄공용어)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회 관할 방식 (Governance)

교회법 (Book of Forms)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정은 교회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개정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단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마다, 교회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회법중

변화의 필요성이 인지되는 부분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관할하기 위한 네가지 형태의 의결기관(court)이 있습니다. 이는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교회법 전문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presbyterian.ca).

당회(The Session, 교회법105-138.1)

장로 교회는 교회 운영방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몇몇 드문 교단 중 하나입니다. 영어명인 “Presbyterian”은 그리스어인 “presbuteros”가 어원으로서, 연장자 혹은 장로 “elder” 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 혹은 목회자라 불리는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 와 리더쉽,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전반적인 교회의 일을 감독 관리하는 여러명의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 가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당회라고 칭합니다.

(교회법 Book of Forms 132-133.2) 에 따라 일정한 절차대로 부름을 받은 “다스리는 장로” 들은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장로로 선출된다는 것은 한개인이 이렇듯 섬기고 지도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명성이나 특권을 누리는 직분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설명된 것처럼, 장로는 자신이 섬기며 돌보아야 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를 받을때, 장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캐나다 장로교회의 규범과 관할방식에 따를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장로는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교회의 상위의결기관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회는 종신직 혹은 임기직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종신직은, 일단 장로로 선출되면,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교회로의 이적 혹은 사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제한없이 시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장로로 선출되면 6년을 한 임기로 하여 시무하고 임기가 끝날 때에 재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받는 안수 자체는 종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회는, 특별한 이유로 해서 당회원이 아닌 분들이 초대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당회원들끼리만의 모임을 갖습니다. 당회 모임을 비공개로 갖는 이유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밀성과 당회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당회의 연대라 함은, 당회에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설혹 반대를 했었다 해도 그 결정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하며,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견을 내서는 안됩니다. 당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논하지만, 당회가 말할 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회는 장로 중 한사람을 대표장로(representative elder) 로 지명하여 목사와 함께 당회의 상위의결기관인 노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관리위원회(The Board of Managers, 교회법158-173)
당회 이외의 교회조직으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매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며, 교회 건물관리 및 재정, 그리고 당회와 협의 하에 회계연도의 예산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당회 내에 재정부 및 관리부가 담당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법 113.6.5).

제직회(The Deacon's Court, 교회법135-138.1)
관리위원회 대신 제직회를 선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직회는 구제(救濟)의 업무를 겸하여 맡게될 수 있습니다.

노회(The Presbytery, 교회법176-258.6)
노회는 노회내 교회에 속한 목사와, 동수의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노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여러 교회와 목사를 돌보며 감독하는 일을 그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노회 내의 목사와 장로는 노회의 여러 결정사항에 투표권을 갖는 노회원(the constituent roll of the presbytery)으로 등록됩니다. 은퇴한 목사나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목사의 경우 준노회원(the appendix to the roll)으로 등록되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 혹은 두달에 한번 간격으로 갖습니다.

대부분 노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두 노회가 있습니다. 한카서부노회 (밴쿠버 아이랜드 부터 위니펙까지)와 한카동부노회 (위니펙부터 뉴펀들랜드까지)는 한국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노회입니다.

노회장(moderator)은 노회의 투표권이 있는 노회원 중에서 매년 임명됩니다. 노회장의 주된 역할은 노회 회의가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회는 노회의 서기, 행정관, 회의 기록 등을 담당할 사람을 임명합니다. 노회의 모든 인원은 평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들과 목사들은 노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회를 지원하고 그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의결기관(court)은 교회 내 법적 문제 혹은 규칙을 다루는 입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교회에 목회적 관리 감독을 제공합니다.

대회(The Synod, 교회법 259-276)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여러 대회는 온타리오주와 아틀란틱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州)의 경계를 따라 구분됩니다. 대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노회 및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책무와 아울러 청소년사역, 캠프사역 및 대회가 고용한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 역할을 통해 해당지역 내의 목회자들 및 장로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깊어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총회(The General Assembly, 교회법 277-312)
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총회는 목사의 6분의1 및 동수의 대표장로로 구성됩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장로와 목사를 총대(commissioner)라고 부릅니다. 각 노회는 이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을 따라 여러 사안에 대해 분별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하루 전체의 일정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총회는 일년에 한차례씩 개최되며 관련 업무는 캐나다 장로교회내의 the Assembly Council이나 the Life and Mission Agency와 같은 여러 기관(Agency)에서 수행합니다.

교인자격안내(Congregational Membership, 교회법139-157.1)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회의 승인하에, 장로교회 교인이 되심을 환영받게 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는 본인의 신앙고백이 수반되어야 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교인 (professing member), 즉 세례교인이 됩니다. 교인은 자신을 당회의 권위 아래에 둘 것과 교회의 평화와 복됨 (복리)를 추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교회법, 139-148)

영유아(嬰乳兒)가 세례를 받는 경우 이들은 유아세례교인(covenant member)이라 칭합니다. 유아세례교인은 성장한 후, 부모 혹은 보호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했던 신앙고백을 이제는 스스로 하여, 세례교인의 자격을 얻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세례교인은 목사 청빙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장로, 집사 및 자산관리위원(Trustee)으로 선출될 수 있고, 장로 및 집사에 대한 선거권이 있고, 교회 자산 처분 관련한 투표권이 있으며, 상위 의결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세례교인은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나, 성년이 되어 교회에 재정적 헌신을 하고 있는 한,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재정관련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출석교인(Adherents)이라 합니다.

출석교인은 장로로 선출될 수 없고 목사 청빙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출석교인이 정기적으로 재정적 헌신(헌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회의 재정관련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는 경우 (Congregations Joini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일군(一群)의 그리스도인들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회의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가입신청을 한 교회의 지도자 및 교인들을 만나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및 해당 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가 됨에 따르는 혜택 및 책임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교육과정(Instructional Sessions)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노회가 이 그룹을 새로운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특별예배를 드립니다. 노회에서는 가입이 승인된 교회에서 “한시적으로 일하게 될 장로(assessor elders)”를 임명하여, 해당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운영방식과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교인중에서 장로를 선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적응 과정을 돕도록 합니다.

새로 가입한 교회는, 노회와 대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부담금을 위해, 교회의 재정상황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는 의무사항입니다. 각 교회는 이러한 부담금 이외에도 *Presbyterians Sharing*에 기부하도록 요구받습니다. *Presbyterians Sharing*은 전국적 규모의 교단 예산으로서, 중요한 선교 활동을 포함한, 교단의 여러 중요한 사역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은 노회가 배당하고 각 교회가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각교회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 핵심적인 면에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노회의 관계(Congreg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Presbytery)

위에 언급된 것처럼, 노회는 목사와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장로교 관할 방식의 훌륭한 점은 특정 개인이 아닌 의회(council)나 의결기관(court)이 관할의 책임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공조(共助) 및 전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분별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절대로 특정 개인의 의지에 집중되어서는 안됩니다.

노회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예배 처소를 승인합니다. 이미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교회라해도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신청을 하면, 신설(新設)교회로 간주됩니다. 일단 캐나다 장로교회의 소속이 되면, 다시 교단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나 개개의 교인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회로 설립된 이후에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게 되므로,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교단과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교회자산(Church Property)

교회자산은 교회의 소유이며, 교회에서 임명한 자산관리위원들(trustees)이 관리합니다. 교회에서 시설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151)

교회건물에 대한 중요한 수리 및 보수, 새로운 건물 건축에 대한 계획안은 교회건축위원회(the Committee on Church Architecture)에 제출되어야 하며 교회건축위원회 및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노회에서 교회가 해산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교회건물· 건물내에 보관되어 있는 교회사용물· 사택· 은행예금액 및 투자)은 캐나다 장로 교회 내의 자산관리위원회(The Trustee Boar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에 귀속됩니다.

그밖의 캐나다 장로교회 주요 방침 (A Few Other Policies)

(온라인 자료 참고, www.presbyterian.ca)

캐나다 장로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대로, 우리가 함께 “품격있고 질서있게” 살아가도록 장려하기 위한 여러 방침이 있습니다. 한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은 “성적 학대 및 성추행 관련방침(Policy on Sexual Abuse and/or Sexual Harassment)”입니다. 교회내에서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게 하는 방침입니다.

“돌보는 사랑으로 인도하기(Leading with Care)” 방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침은 교회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장로교회는 인종차별 관련 방침(Policy on Racial Harass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방침은 그 절차에 있어 성적 학대 및 성추행 관련방침 과 유사합니다.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에 가입하는 경우 (Ministers Joini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이후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캐나다 장로교회는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직분을 맡기까지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두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는 교육 및 가입위원회(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Reception)에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목사로서 적격성 여부 심사를 신청합니다. 만일 이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목사는 조건부 혹은 아무 조건 없이 적격성이 확인(선언)됩니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요구된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과정을 마친 목회자는 교회의 부름을

찾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초빙하고, 노회가 승인하고, 목회자가 받아들이면, 목회자는 위임을 받고 노회의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노회에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가입신청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목사는 노회의 개입없이 바로 교육 및 가입위원회(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Reception)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 교단의 가입을 원하는 소수민족 교회의 목사 또한 그 교회가 속하기를 원하는 노회에 가입 신청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노회에서 감독하며, 목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최종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목사의 사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목사와 직접 대면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당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제출된 이의제기를 노회로 전달합니다. 당회는 목사에게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사례금은 적어도 총회에서 규정한 최저 사례금 혹은 그 보다 높게 정한 노회의 최저 사례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도록 교회가 약정합니다. 목사는 비상근(非常勤) 근무형태(part-time ministry)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반일근무/half-time 이하의 근무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사례금 및 혜택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건강 및 치과보험료와 연금보험료 (pension premium)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청빙을 위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는 사례금 중에서 일정액을 교단연금제도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보험료가 있는 경우, 자진해서 지불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사청빙(Calling a Minister)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interim moderator)을 임명하여 목회자

청빙 과정을 도우며, 그 기간동안 사실상 그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하게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었을때, 임시당회장은 당회와 관리위원회 및 교회 내 여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교인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당회와 함께 교회소개서 (congregational profile)을 작성합니다. 교회소개서는 해당 교회에서 자신들의 현재 모습 및 필요사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청빙공고를 낸 이후에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받게 되면, 어떠한 지원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로 가장 적합할 것인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관례적으로 청빙위원회에서 단일 후보를 선정 후 당회에 추천합니다.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릴 때, 당일 설교하도록 초청받은 (preach for the call) 목사는 교회 내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예배 시간 중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후 공동의회를 갖고, 당일 교회에 모인 세례교인들이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목사를 청빙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청빙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 결정은 노회에 전달됩니다. 노회에서 청빙을 승인하면, 노회의 결정은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전달됩니다. 목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 역시 이 결정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도 청빙을 승인하면, 목사의 위임예배 일자가 결정됩니다. 청빙을 받은 목회자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수예배를 겸한 위임예배를 드립니다.

부언

저희는 귀하께서 캐나다 장로교회 가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기쁘고, 본 안내서가 귀하께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본 안내서는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홈페이지를(presbyterian.ca) 이용하시거나 노회가 마련하는 관련 강좌를 수강하셔서 캐나다 장로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주요 자료 및 방침

아래 소개되는 자료는 www.presbyterian.ca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지역 노회 혹은 총회 서기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800-619-7301

항목	사용 가능 자료 및 설명
----	---------------

<p>신앙의 기준 (Standards of Faith)</p>	<p>신구약성경, 산 믿음(Living Faith 한국어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기타 해당되는 다른 여러 자료가 교회법 책자 내 “역사적, 신앙적기반”(Historical and Confessional Base)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p>
<p>교회 관할 방식 (Governance)</p>	<p>교회법 (www.presbyterian.ca에 소개되어 있습니다)</p>
<p>성적 학대문제 관련방침 (Sexual abuse policy)</p>	<p>성적 학대 및 성추행 관련방침(Policy on Sexual Abuse and/or Sexual Harassment)에서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무관용 입장을 밝히고, 혐의가 제기된 경우 밝아야 할 절차를 알려줍니다.</p>
<p>교회 공동체 내의 안전관련사항 (Safe Church Policy)</p>	<p>돌보는 사랑으로 인도하기(Leading with Care): 어린이, 청소년 및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인들의 안전이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서 보장되게 하고자 마련된 방침입니다.</p>
<p>교회자산 관련법규 (Church Property act)</p>	<p>연방 및 주정부 법령 (Federal and Provincial Act)이 자산관리위원회(The Board of Trustees)의 법적 근거가 되어, 개교회가 해산되는 경우 남아있는 모든 교회자산은 교단 내의 자산관리위원회에 귀속됨을 명기합니다. (캐나다 장로 교회로 설립된 이후에는, 교회 자산을 가지고 캐나다 장로 교회를 탈퇴하지 못할 수 있다.)</p>

목회자 사례금 관련방침 (Stipend Policy)	교회는 적어도 총회에서 제정한 최소 사례금 혹은 보다 높게 책정된 노회의 최저 사례 기준에 따라 목회자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는 비례해서)
교회연금 (Church Pensions)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는 교단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연금의 고용인 부담금을 캐나다 장로교회에 지불해야 하며 또한 목회자 부담금을 목회자로부터 받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 및 치과 정책 (Health and dental policy)	목사 (선택적으로, 다른 교회 직원 해당 가능)는 의료 및 치과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급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교회의 재정적 의무사항 (Congreg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노회 및 대회는 운영예산을 얻기 위해, 교회에 재정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교단 기금 (Presbyterians Sharing mission fund)	각 교회는 전국적 규모의 교단예산인 Presbyterians Sharing에 기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노회를 통해 할당금액을 각 교회에 전달합니다.
목사청빙 (Calling a minister)	목사청빙에 관한 사안들은 노회에서 합의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목사청빙(Calling a Minister)”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의 결정에 따른 목사와 교회의 목회적 유대관계 중단시 사례금 지급 (Payment when presbytery dissolves pastoral tie with minister)	“목회적 유대관계 중단에 관한 방침(The Policy on the Dissolution of the Pastoral Tie)”에서는 교회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거나, 노회가 목사와 교회의 목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목사의 목회사역이 중단되는 경우, 목사에게 사례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합니다.

연락처	교환 번호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M3C 1J7 1-800-619-7301 or 416-441-1111 Website: presbyterian.ca	Clerks of Assembly, ext. 226 Financial and Support Services, ext. 320 Pension and Benefits, ext. 287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ext. 264